

#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## 훈계 · 통보

제 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○구, ○구, ○구, ○○군

훈계대상자 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위 관련자 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2013. 7. 12.부터 현재까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업무와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, 법령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### 1. 중대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<sup>1)</sup>은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[별표1] 제12호 가목에 따르면 1건의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상자 수에 따라

---

1)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, 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 업무 등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

위반차량 운행정지<sup>2)</sup>, 감차<sup>3)</sup>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화물협회<sup>4)</sup> 소속 ○○○○화물(주)(운전자 ○○○○, 차량번호: 울산00아0000)이 2013. 10. 12. 울산광역시 ○구 ○○동 ○○○○사거리에서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중상자 1명을 발생하게 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2014. 2. 25.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았는데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2018. 3. 13. 감사일 현재까지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, [표1]과 같이 2014. 1. 1.부터 2017. 12. 31.까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총 4건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.

[표1] 중대교통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내역

| 연번 | 사업자           | 운전자 | 사업자 주소                   | 차량번호          | 사고일자<br>(통보일자)             | 중대한 교통사고<br>통보내용  | 행정처분<br>소관청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1  | ○○○○<br>화물(주) | ○○○ | ○○군 ○○면<br>○○리 0000-0 2층 | 울산00아<br>0000 | '13.10.12.<br>( '14.02.25) | 중상1명<br>(신호·지시위반) | ○○군         |    |
| 2  | ○○○○(주)       | ○○○ | ○○군 ○○6길 00<br>000       | 울산00바<br>0000 | '14.04.27.<br>( '14.05.23) | 중상2명<br>(신호·지시위반) | ○○군         |    |
| 3  | 개인차량          | ○○○ | ○구 ○○12길 00              | 울산00자<br>0000 | '14.03.12.<br>( '14.04.24) | 중상2명<br>(신호·지시위반) | ○구          |    |
| 4  | 개인차량          | ○○○ | ○구 ○○5길 00               | 울산00자<br>0000 | '15.06.05<br>( '15.08.31)  | 중상1명<br>(중앙선 침범)  | ○구          |    |

※ 울산광역시(○○○○과) 제출자료 재구성

## 2.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

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2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제1항(별표 3의2)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

2) 중상자(2명이하: 운행정지 5일, 3명~4명: 운행정지 15일, 5명~9명: 운행정지 30일), 사망자(2명이하: 운행정지 30일, 3명~4명: 운행정지 60일)

3) 중상자(10명 이상: 1대 감차), 사망자(5명~9명: 1대 감차, 10명 이상: 2대 감차)

4) 주소: 울산광역시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0000-002층

득한 자가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,

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,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<sup>5)</sup>을 반납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울산광역시에서는 2017. 11. 29.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있는 울산광역시 ○구 ○○1길 00 000동 000호에 거주하는 ○○○이 2017. 11. 20. 음주운전으로 인해 「도로교통법」에 의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통보받았는데도, 2018. 3. 13. 감사일 현재까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[표2]와 같이 2014. 1. 1.부터 2017. 12. 31.까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총 3건의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감사기간 중인 2018. 3. 2., 같은 해 3. 8., 같은 해 3. 9.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사전통지 하였다.

[표2]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내역

| 연<br>번 | 업체명  | 운전자성<br>명 | 사유 발생일<br>(통보일)           | 차량번호      | 종사자격<br>미달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| 소관청 | 사전<br>통지일 |
|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1      | 개인차량 | ○○○       | '17.11.20<br>( '17.11.29) | 울산00자0000 | 운전면허 취소<br>(음주 교통사고)                 | ○구  | '18.03.09 |
| 2      | ○○○○ | ○○○       | '17.11.26<br>( '17.11.29) | 울산00사0000 | 운전면허 취소<br>(음주 교통사고)                 | ○구  | '18.03.08 |
| 3      | ○○○○ | ○○○       | '18.01.04<br>( '17.11.29) | 서울00아0000 | 운전면허 취소<br>(정기적성검사 미필) <sup>6)</sup> | ○구  | '08.03.02 |

5)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(화물운송종사자격증)을 내주도록 되어 있음

### 3. 화물자동차 차고지 미확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7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[별표1]의 규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 또는 타인 소유 토지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등 최저보유 기준에 맞게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,

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[별표1]의 규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최저보유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1차는 사업전부 정지 30일을 처분하고 2차는 허가취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울주군(○○○○과)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○○○의 차고지<sup>7)</sup> 임차기간이 2014. 1. 21. 만료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, ‘차고지 설치 확인서’ 징구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전부정지(30일)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,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4년 1개월이 경과한 2018. 3. 13.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.

조치할 사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

---

6)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,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(도로교통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28])

7) 차고지 주소(울산광역시 ○구 ○○동 00)

**[훈계]** 위 사람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.

○구청장, ○구청장, ○구청장, ○○군수는

**[통보]** ①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하게 한 ○○○○화물(주) 등 4명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, ②운전면허가 취소된 화물운송종사자 ○○○ 등 3명에 대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증을 반납 받으시기 바라며, ③차고지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○○○에 대하여 사업 전부정지(30일)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